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한 어린이
집으로부터의 격리 대상의 격리 조치를 정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1.29. ~2.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,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건강진단)⑤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<u>휴직</u> 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33조(건강진단)⑤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<u>휴직</u>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 <u>제33조의2(급식 관리) (생 략)</u>	<u>제33조의2(치료 및 예방조치)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제33조의3(급식 관리) (현행과 같음)</u>